

**한화생명 2030 목돈마련 디딤돌저축보험
무배당 상품요약서**

이 상품요약서는 보험약관 등 한화생명 2030 목돈마련 디딤돌저축보험 무배당의 기초서류에 기재된 주요내용을 요약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반드시 보험약관 및 상품설명서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상품의 특이사항

Q : 한화생명 2030 목돈마련 디딤돌저축보험 무배당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A : ① 한화생명 2030 목돈마련 디딤돌저축보험 무배당은 계약자적립액 산출시 고정이율(연복리 5.0%)을 적용하여 목돈마련이 가능한 저축상품입니다.

②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자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청약할 수 있습니다.

- 가입일 기준 만19세~만39세 이하인 경우
- 국세청에서 소득금액증명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가입일 기준 아래 요건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과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만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함)
 -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000만원 이하(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0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및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함)

Q : 추가납입의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A: 여유자금이 있을 경우, 보험계약 성립 후부터 보험기간 중에 수시로 추가납입이 가능하며, 경과 기간에 따라 1회 납입 가능한 추가납입보험료의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최저한도
 - 기본보험료와 동시에 납입할 경우 : 없음
 - 기본보험료와 동시에 납입하지 않을 경우 : 매회 1만원이상 금액
- 최고한도
 - 1회 납입 가능한 추가납입보험료의 한도
= (기본보험료 × 가입후 경과월수 + 선납보험료) × 50%
 - 이미 납입한 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

※ 가입후 경과월수는 가입시를 1개월로 하며, 보험료 납입기간을 최고한도로 합니다.
다만, 중도인출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인출금액 내에서 보험료 납입한도와는 별도로 추가납입이 가능합니다.

Q : 중도인출의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A : 계약일로부터 1개월 경과 후부터 보험년도 기준 연12회(일 또는 월 제한없음)에 한하여 인출 당시 해약환급금(보험계약대출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의 70% 범위 내에서 중도인출 할 수 있으며, 인출시 수수료는 인출금액의 0.2%이내(2,000원 한도)로 합니다. 다만, 인출금액은 10만원 이상으로 하며, 보험년도 기준 연 4회에 한하여 인출 수수료를 면제합니다. 인출 후 계약자 적립액이 기본보험료의 2배 미만인 경우에는 인출이 불가합니다.

Q : 이 상품은 어떤 보험료 할인이 있나요?

A : 보험료 할인에는 상생할인이 있으며, 적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상생할인 : 계약자가 다음 중 하나이상 해당하는 경우(이하 '상생할인 적용대상'이라 합니다.) 기본보험료의 1.0%를 할인하여 영수합니다.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으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있는 사람
 -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8.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 가구

중위소득 60%이하 한부모가정의 부 또는 모

- 「다문화가정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정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10호에 차상위계층인 가정의 부 또는 모

※ 최초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자가 상생할인 적용대상이 아니었으나, 이후 상생할인 적용 대상이 되고 계약자가 회사에 '상생할인'을 신청한 경우, 신청일 이후 최초로 납입하는 보험료부터 기본보험료의 1.0%를 할인하여 영수합니다.

Q : 이 보험에 추가된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K1.9)은 어떤 특약인가요?

A : 계약자가 주계약 및 특약에서 정한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회사가 정한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 체결시 또는 계약체결 이후 지정대리청구인을 지정할 수 있는 제도성 특약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약관 본문 및 사업방법서, 상품설명서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보험가입 자격요건

가. 보험종류

구 분	보험종목의 명칭
주계약	한화생명 2030 목돈마련 디딤돌저축보험 무배당

나.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가입나이 및 보험료 납입주기

보험기간	보험료납입기간	가입나이	납입주기
5년	전기납	만 19세 ~ 만39세	월납

다. 가입한도

1) 기본보험료

: 매월 계속 납입하기로 한 월납보험료를 말합니다. 단, 보험료는 만원 단위로 납입하며, 기본보험료는 매월 10만원이상 50만원 이하로 합니다.

2) 추가납입보험료

: 기본보험료 이외에 보험계약 성립 후부터 보험기간 중에 수시로 납입하는 추가보험료를 말하며 경과기간에 따라 1회 납입가능한 추가납입보험료의 한도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의해 계산합니다.

(1) 최저한도

- 기본보험료와 동시에 납입할 경우: 없음
- 기본보험료와 동시에 납입하지 않을 경우: 매회 1만원 이상 금액

(2) 최고한도

- 1회 납입 가능한 추가납입보험료의 한도

= (기본보험료 × 가입후 경과월수 + 선납보험료) × 50% - 이미 납입한 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

※ 가입후 경과월수는 가입시를 1개월로 하며, 보험료 납입기간을 최고한도로 합니다.

다만, 중도인출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인출금액 내에서 최고한도와는 별도로 추가납입이 가능합니다.

라. 건강진단여부

한화생명 2030 목돈마련 디딤돌저축보험 무배당의 경우, 기존 다른 보험상품의 가입유무, 나이, 청약서의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 등에 따라 건강진단을 시행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보험가입 가능여부를 판정할 수 있습니다.

3.

보험금 지급사유 및 지급제한 사항

가. 상품의 구성

주계약	한화생명 2030 목돈마련 디딤돌저축보험 무배당
제도성특약	+ 비과세종합저축 세제지원특약(K3.1) + 연금전환특약Ⅱ(K10.4) 무배당 +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K1.9) + 특정 신체부위·질병 보장제한부 인수특약(K3.7) + 표준하체인수특약(K3.8)

나. 보험금 지급사유 및 보험금부별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

아래 내용은 가입하신 상품이 보장하고 있는 내용에 대한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히 요약 정리한 것으로 상세한 내용은 약관본문의 내용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주계약

급부명칭	지급사유	지급금액
만기보험금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피보험자가 살아 있을 경우	계약자적립액
사망보험금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지급사유발생시점의 계약자적립액 + 기본보험료의 1배
재해장해급여금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재해'가 발생하고 그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1,000만원 × 해당 장해지급률

- 주) 1. '계약자적립액'이라 함은 이 보험의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2. 만기보험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중도인출하였을 경우 이를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의 100.1%를 최저보증합니다.
 3. 「동일한 재해」로 인한 장해지급률은 100%를 한도로 합니다.

다. 일반적인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

■ 보험당사자간에 의한 보험사고 발생시 지급제한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①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가.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

특히 그 결과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약관에서 정한 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나.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는 부활(효력회복)청약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자살한 경우에는 약관에서 정한 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②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③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고의로 보험금 지급사유를 발생시킨 경우

②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다만,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사기 등에 의한 보험계약 체결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진단, 약물사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의 진단 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보장개시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는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② ①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중도인출하였을 경우 이를 차감한 금액)를 돌려 드립니다.

■ 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중도인출하였을 경우 이를 차감한 금액)를 돌려 드립니다.

①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전자서명법」 약관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이 있는 경우로서 상법 시행령 제44조의2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 확인 및 위조·변조 방지에 대한 신뢰성을 갖춘 전자문서를 포함)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때 단체보험의 수익자를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로 지정할 때에는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적용합니다.

② 만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心神喪失者) 또는 심신박약자(心神薄弱者)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계약의 경우

다만, 심신박약자(心神薄弱者)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속 단체의 규약에 따라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이 유효합니다.

- ③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보나, ②에 만15세 미만자에 관한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계약 전 알릴 의무 관련사항 등

① 계약 전 알릴 의무(고지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에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② 계약 전 알릴 의무(고지의무) 위반 효과

만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 알릴의무(고지의무) 위반으로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해약환급금을 드리며, 보장을 제한하였을 때에는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4.

보험료 산출기초

가. 보장부분 적용이율

Q : 보장부분 적용이율이란 무엇인가요?

A : 보험료를 납입하는 시점과 보험금 지급 사이에는 시차가 발생하므로 이 기간 동안 기대되는 수익을 미리 예상하여 일정한 비율로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데, 이 할인을 보장부분 적용이율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보장부분 적용이율이 높으면 보험료는 내려가고, 낮아지면 보험료는 올라갑니다.

Q : 이 상품에 적용한 보장부분 적용이율은 얼마입니까?

A : 한화생명 2030 목돈마련 디딤돌저축보험 무배당의 보장부분에 사용한 적용이율은 연복리 2.50% 입니다. 다만, 동 이율은 계약자적립액 및 해약환급금을 보증하는 이율은 아닙니다.

나. 적립부분 적용이율

적립부분 적용이율이란 보험회사가 장래 보험금 지급을 위하여 계약자가 내는 납입보험료의 일정 부분을 적립해 나가는데, 이 적립금을 부리하는 이율을 의미합니다. 납입하신 보험료 중 일부는 보장 및 보험회사 운용경비로 사용되며 위험보험료,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을 차감한 금액만이 적립됩니다.

다. 적용위험률

Q : 적용위험률이란 무엇인가요?

A : 한 개인이 사망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등의 일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할 확률을 예측한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적용위험률이 높으면 보험료는 올라가고, 낮으면 보험료는 내려갑니다.

적용 위험률	연령	남자	여자
무배당 예정 경험 3~100% 재해 장해율	20세	0.00013	0.00005
무배당 예정 경험 사망률	20세	0.00032	0.00020

라.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

Q :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이란 무엇인가요?

A :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이란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의 체결, 유지 및 관리 등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보험료 중 일정비율을 책정한 것을 말합니다.

5.

계약자 배당에 관한 사항

계약자 배당은 배당상품에 한하여 실시를 하며, 무배당 상품은 배당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배당 상품은 배당상품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한화생명 2030 목돈마련 디딤돌저축보험 무배당은 무배당상품으로서 계약자 배당을 하지 않습니다.

6.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

가. 해약환급금 산출기준 등 안내

Q: 해약환급금은 어떻게 산출되며,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은 이유는 뭔가요?

A: 이 보험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에서 경과된 기간의 위험보험료, 계약체결 및 계약관리비용 등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써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 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나. 해약환급금 및 적립금 예시

(기준: 30세, 5년만기, 전기납, 월납, 기본보험료 30만원, 단위 : 원)

경과 기간	납입 보험료	남자				여자			
		해약 환급금	환급률	계약자 적립액	적립률	해약 환급금	환급률	계약자 적립액	적립률
3개월	900,000	905,996	100.6%	905,996	100.6%	906,242	100.6%	906,242	100.6%
6개월	1,800,000	1,818,081	101.0%	1,818,081	101.0%	1,818,455	101.0%	1,818,455	101.0%
9개월	2,700,000	2,733,323	101.2%	2,733,323	101.2%	2,733,762	101.2%	2,733,762	101.2%
1년	3,600,000	3,650,200	101.3%	3,650,200	101.3%	3,650,674	101.4%	3,650,674	101.4%
2년	7,200,000	7,379,494	102.4%	7,379,494	102.4%	7,380,819	102.5%	7,380,819	102.5%
3년	10,800,000	11,267,131	104.3%	11,267,131	104.3%	11,269,767	104.3%	11,269,767	104.3%
4년	14,400,000	15,349,150	106.5%	15,349,150	106.5%	15,353,150	106.6%	15,353,150	106.6%
5년	18,000,000	19,635,258	109.0%	19,635,258	109.0%	19,640,703	109.1%	19,640,703	109.1%

- 주) 1. 이 보험계약을 중도 해지 할 경우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에서 경과된 기간의 위험보험료, 계약체결 및 계약관리비용 등이 차감되므로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수도 있습니다.
2. 상기 해약환급금에 적용된 적립이율은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확정이율(연복리 5.0%)로 해약환급금은 다음과 같은 경우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매월 계약해당일에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은 경우 또는 보험료 납입 일시중지를 한 경우
 - 중도인출, 선납을 한 경우 또는 보험료 납입계획이 변경된 경우
3. 상기 예시된 환급률은 경과기간별로 각 시점에서의 해약환급금을 그 시점까지 납입한 보험료로 나눈 비율입니다.
4. 만기시점의 해약환급금은 주계약의 만기보험금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5. 상기 예시된 금액은 '결혼출산 보너스' 및 '상생활인'이 반영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7.

모집수수료율

Q : 모집수수료란 무엇인가요?

A : 보험회사가 내부수수료 규정에 따라 보험모집인(보험설계사)에게 보험판매, 계약관리 등의 대가로 지급하는 보수

(기준 : 남자 30세, 기본보험료 30만원, 5년만기, 전기납)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6차년도	7차년도	합계
모집수수료율	-	-	-	-	-	-	-	0.00%

- ※ 1차년도~7차년도까지의 "연도별 모집수수료율"은 보험계약자가 납입하는 전체보험료 대비 보험회사가 보험모집인에게 지급하는 "연도별 모집수수료"의 비율임.
- ※ "모집수수료율 합계"는 보험계약자가 납입하는 전체보험료 대비 보험회사가 보험모집인에게 지급하는 "전체 모집수수료"의 비율임.
- ※ 위에서 예시한 모집수수료율은 보험회사가 모집인에게 장래에 지급될 금액을 예상한 것으로, 실제 지급될 모집수수료율과 다를 수 있습니다.

8.

공제금액 공시에 관한 사항

가. 기본비용 및 수수료

(기준 : 남자, 30세, 5년만기, 전기납, 월납, 기본보험료 30만원)

경과기간	~5년
보험관계비용(%)	최소 0.07 ~ 최대 4.82

구 분	목 적	시 기	비 용
보험관계비용	계약체결비용	매월	경과이자의 5% (최대 7,140원)
	계약관리비용	매월	경과이자의 15% (최대 7,140원)
	위험보험료	매월	기본보험료의 0.0573% ~ 0.0583% (172원 ~ 175원)
해약공제	해지에 따른 패널티	해지시	해당없음

- 주) 1. 경과이자 : 매월 계약해당일의 기본보험료에 의한 계약자적립액에서 이미 납입한 기본보험료(추가 납입보험료에 의한 계약자적립액에서 중도인출할 금액이 부족하여 기본보험료에 의한 계약자적립액에서 중도인출하였을 경우 이를 차감한 금액, 이하 '이미 납입한 기본보험료'라 합니다)를 차감한 금액
2. 단, 이미 납입한 기본보험료가 0보다 작은 경우, 이미 납입한 기본보험료는 0으로 하며 경과이자가 0보다 작은 경우, 경과이자는 0으로 합니다.

나. 추가비용 및 수수료

구 분	목 적	시 기	비 용
중도인출 수수료	중도인출에 따른 비용	중도인출시	보험년도 기준 연 4회에 한하여 수수료가 면제되며, 이후에는 인출금액의 0.2%와 2,000원 중 적은금액
추가납입보험료	계약관리비용	매월	매월 경과이자의 15%

- 주) 1. 경과이자 : 매월 계약해당일의 추가납입보험료에 의한 계약자적립액에서 이미 납입한 추가납입 보험료(중도인출하였을 경우 이를 차감한 금액)를 차감한 금액
2. 계약관리비용은 매월 이미 납입한 추가납입보험료(중도인출하였을 경우 이를 차감한 금액)의 0.007%를 최고한도로 합니다.
3. 단, 이미 납입한 추가납입보험료(중도인출하였을 경우 이를 차감한 금액)가 0보다 작은 경우, 이미 납입한 추가납입보험료(중도인출하였을 경우 이를 차감한 금액)는 0으로 하며 경과이자가 0보다 작은 경우, 경과이자는 0으로 합니다.
4. 이미 납입한 추가납입보험료 계산시 중도인출 금액은 추가납입보험료에 의한 계약자적립액에서 인출한 금액으로 합니다.
5. 상기 중도인출수수료는 약관에서 정한 금액 한도 내에서 현재 이 상품에 부과하고 있는 수수료입니다. 수수료 한도에 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약관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